

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안연월일	2022. 3. .
제안자	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

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	
번호	

제안연월일 : 2022. 3. .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(2022. 1. 13. 字 시행)전부개정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올바른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시민에게 보다 적법하고 알기 쉬운 조례를 제공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상위법령 불부합 규정 개정(안 제1조)

○ 올바른 띄어쓰기 반영

(안 제2조제1항, 제5조제2항, 제6조제1항 제7조, 제8조)

3. 개정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46조

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같은 법 시행령 제43조”를 “같은 법 시행령 제46조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단서 중 “행할수”를 “행할 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기간중”을 “기간 중”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지방자치단체의의회”를 “지방자치단체의 의회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시밋”을 “시 밋”으로, “사무중”을 “사무 중”으로 한다.

제7조 중 “검토후”를 “검토 후”로 한다.

제8조 중 “계속중”을 “계속 중”으로, “수사중”을 “수사 중”으로, “아니된다”를 “아니 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9조 및 <u>같은 법 시행령 제43조</u>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(이하 "감사"라 한다)와 행정사무조사(이하 "조사"라 한다)에 관한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같은 법 시행령 제46조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2조(감사) ①의회는 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. 다만, 본 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(이하 "감사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하여 감사를 <u>행할수</u> 있다.	제2조(감사) ① ----- ----- ----- ---. ----- ----- ----- <u>행할 수</u> --.
②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<u>기간중</u> 9일 이내로 실시하되,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. 다만, 본회의에서 감사를	②----- ----- <u>기간 중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행할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결
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
다.

③ ~ ⑤ (생략)

제5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
관) ① (생략)

②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
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
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
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
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
지방자치단체의의회와 상호 협
의하여야 한다.

제6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
무) ①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9
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
무와 시 및 시장이 위임받아 처
리하는 국가의 사무 및 경상북
도의 사무중 국회와 경상북도의
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
를 제외한 사무

제7조(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) 본
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
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
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
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.

--.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5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
관) ① (현행과 같음)

②-----

지방자치단체의 의회-----
-----.

제6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
무) ①-----

--- 시 및 -----

--- 사무 중 -----

제7조(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) --

----- 검토 후 -----

-----.

제8조(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) 감 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 을 침해하거나 <u>계속중인</u> 재판 또는 <u>수사중인</u>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<u>아니된다</u> .	제8조(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) -- ----- ----- <u>계속 중</u> ----- --- <u>수사 중</u> ----- ----- <u>아니 된다</u> .
---	--

관계법령

□ 「지방공무원법 시행령」

제36조(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)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(이하 “정책지원전문인력”이라 한다)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·조사·연구,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 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.